

입찰신청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2024-1호	입찰일자	20 . . .
	건명			
	금액	금 원정(\)		
	낙찰물품 인도가능일자	낙찰일로부터 일 이내		
입찰자	상호(법인명) 또는 성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 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 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 다. 입찰자 : (인) 사회적협동조합 파주지역자활센터장 귀하				

청렴이행계약 서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서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포함, 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가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진주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 받은 자 및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4 . . .

서약자 : (인)

사회적협동조합 파주지역자활센터장 귀하